

“자원순환형 사회를 선도하는”



한국건설자원협회

수신자 각 지회장 및 대표이사
(경유)
참 조 사무국장
제 목 안전검사 고시 개정 알림



1. 지난 '24.7.1일 개정된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」*에 대한 후속조치로 관련 기준과 방법을 정하기 위한 「안전검사 고시」(고용노동부고시 제2026-49호)가 개정·시행('26.6.26)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* 자율안전관리 대상이었던 파쇄기 및 분쇄기를 안전검사 대상으로 지정('26.6.26 시행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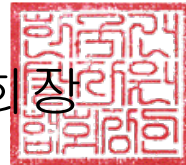
※ (참고) 파·분쇄기 설치 시기별 최초 안전검사 시기

파·분쇄기 설치 시기	최초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
'13.3.1 이전	'26.6.26 ~ '26.12.25
'13.3.1 ~ '23.6.26	'26.6.26 ~ '27.6.25
'23.6.27 ~ '26.6.25	설치 이후 3년 되는 날 기준 6개월 이내

2. 이와 관련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파쇄기 및 분쇄기에 대한 안전 검사 적용범위 및 검사기준 해설집(붙임1 참조)과 Q&A(붙임2 참조)를 배포 하였으니 이를 참고하시어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파·분쇄기 안전검사 적용범위 및 검사기준 해설집(협회 홈페이지 참조) 1부.
2. 파·분쇄기 안전검사 시행 Q&A(협회 홈페이지 참조) 1부. 끝.

한국건설자원협회 회장



07/09

팀장 권병문 부장 강한서 사무총장 조정환 회장 김동구

협조자

시행 정책기획부-396 (2026.07.09) 접수

우 05636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12길 18 (방이동, 한국건설자원공제조합) / <http://www.koras.org>

전화 02-2046-5921 전송 02-3476-8464 / hmhhihi@koras.org / 공개